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78호 2015. 12. 28. (월)**

##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66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정선군 규칙 제1267호 정선군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 규 칙

2015년도 제12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8일

##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규칙 제1266호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정선읍장 · 고한읍장 · 사북읍장 · 신동읍장 · 여량면장 · 북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3. 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면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p> <p>1. 정선읍장·고한읍장·사북읍장·신동읍장·남면장·여량면장·북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p> <p>2. (생략)</p> <p>&lt;신설&gt;</p>	<p>제12조(직급) ----- ----- ----- -----.</p> <p>1. 정선읍장·고한읍장·사북읍장·신동읍장·여량면장·북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p> <p>2. (현행과 같음)</p> <p>3. 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p>

개 정 이 유

- 읍·면장 복수직급·직렬을 조정하여 행정조직의 활력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 별표(1~4)와 같음
- 읍·면장 복수 직렬 조정(안 제12조)

구 분		직 급
현행	정선읍장 고한읍장 사북읍장 신동읍장 남면장 여량면장 북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화암·임계면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조정	정선읍장 고한읍장 사북읍장 신동읍장 여량면장 북평면장	현행과 같음
	화암·임계면장	현행과 같음
	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별표 1]

## 본청업무분장표(제4조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감사실	1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	군정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 평가 및 심사분석
	4	군정 운영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공약사항 실천관련 업무 전반
	6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7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8	군정보고서·군정백서의 작성 및 발간
	9	각종 지시사항 관리
	10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업무
	11	각종위원회 운영 및 정비 총괄
	12	군의회 운영지원 및 협의
	1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역행복생활권 및 지역발전 특화·특구에 관한 사항
	15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총괄
	16	군정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7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18	예비비 관리
	19	지방채발행,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20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
	2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지방교부세 관리
	23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
	24	각종 기금의 총괄 관리
	25	투·융자,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6	경영수익사업 총괄
	27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총괄
	28	예산확정 고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29	감사기본계획 수립
	30	비위공무원 조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1	감사 및 직무감찰

	32	감사결과 보고, 처분지시와 감사처분사항 이행확인
	33	공무원징계의결 요구 및 훈계 처분
	34	면책 심의회 운영
	35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36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관한 사항
	37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도 측정
	38	명예감사관제 운영
	39	공직자 병역공개
	40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41	군정홍보계획수립 및 시행
	42	언론공보자료의수집및제공
	43	청내방송시설관리
	44	홍보매체의 보급 및 육성
	45	군보 및 군정소식지 발간
	46	정선군 이미지개선화사업(CIP) 및 캐릭터 관리
	47	군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48	자치법규·행정규칙 등 중요문서의 심사
	49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50	자치법규의 발간 및 편찬
	51	법제사무 지도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52	소송사건의 총괄 및 조정,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53	행정심판 관련사무
	54	소청심사 관련사무
	55	시책발굴 업무 전반
	5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57	지역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사항
	58	기초 및 광역발전계획 수립
	59	시군 연계협력사업
	60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관리
	61	군정발전정책개발및시책개발업무
	62	서울사무소운용,강원도서울사무소·세종사무소연계업무
	63	전시공보계획에관한사항
	64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	1	자치행정 사무의 총괄·기획 조정
	2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징계·집행에 관한 사항
	5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7	읍·면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8	선거관리 사무
	9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0	지방행정 동향 및 여론관리
	11	이·반장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관리
	13	새마을 지도자 관리, 새마을 운동 지원업무
	14	민주평통업무지원
	15	행정사 및 소개영업 지도감독
	16	제도개선 업무
	17	자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일제강제동원피해신고에 관한 사항
	19	고객만족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관한 사항
	21	규제개혁 업무
	22	지방분권업무
	23	공무원 기부금품 모집 통제
	24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25	국·내외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에 관한 사항
	26	적십자회비모금에 관한 사항
	27	견문보고제 운영
	28	주민 반사회 운영
	29	인구늘리기시책운영총괄
	30	새마을 금고 인가 및 운영관리
	31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2	도정 상담위원 관리
	33	공인관리
	34	비밀취급 인가 관리
	35	각종 행사 의전관리
	36	통계조사(인구주택, 산업, 농업, 광공업, 사업체 기초통계 및 고용구조 조사)

	37	통계조사의 종합조정
	38	기본통계의 정비
	39	포상업무
	40	공무원 복무관리
	41	보안업무
	42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양에 관한 사항
	43	해외 선진지 견학
	44	정부 3.0 업무
	45	국기 및 가로기 관리
	46	공무원직장협의회관리및지원
	47	직원 복리증진 사무
	48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무
	49	비정규직 각종 보험에 관한 사항
	50	지방행정공제회 관련 사무
	51	직장체육 활동 지원
	52	공무원 동호회 지원
	53	국가 기반보호체계 업무에 관한 사항
	54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55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6	인력동원 및 자원조사 관리
	57	전시대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 통제
	58	충무계획 조정·통제
	59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인도에 관한 사항
	6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61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62	통합방위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3	해외선진문화 기행 및 교류
	64	출향단체 관리 및 지원
	65	문서보존 통제 및 문서보존관리
	66	행정지도 발간
	67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68	정보화 시책에 관한 사항
	69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70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71	지역정보이용센터 운영

	72	군 홈페이지, 웹메일 운영관리
	73	온나라 시스템 운영관리
	74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산시설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75	전산보안업무 및 행정전자서명 관리
	76	지방행정전산화 계획 수립 및 시행
	77	주민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78	자체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79	각종 전산프로그램 보급·운영
	80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 지원
	81	정보화 마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2	본청 및 소속기관의 통신시설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83	통신 보안관리
	84	전자정부 통합망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85	각종 통신회선의 통합관리
	86	행정전화 및 FAX(모사전송)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87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88	테이더 통신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89	정보통신검사 사용전 기술교육
	90	건축허가 관련 통신설계도서 검토
	91	무인당직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92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93	평시 병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94	그밖의자치행정과소관에관한사항과다른실,과에속하지아니하는사무의조정
세무회계과	1	자금운용 및 자금운용 관리감독
	2	정선군 금고계약 및 지도감독
	3	자금배정 및 관리
	4	국·도비 보조금 수입관리
	5	채권 총괄관리
	6	지방세 징수실적 관리 및 세수추계
	7	지방세 전산수납 관리 및 과오납금 결정 처리
	8	지방세정 운영에 관한 사항
	9	세외수입 관리
	10	세무조사, 지방세 구제, 세무상담
	11	비과세 및 감면분 사후관리

	12	부동산 취득세 부과 징수
	13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과 부과·징수
	14	지방세 전산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결정 및 처리
	16	지방세 공시송달
	17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18	자동차세 부과·징수
	19	재산세 부과·징수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20	주민세 부과·징수
	21	담배소비세 부과·징수
	22	종합부동산세 자료 지원
	23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24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공시업무
	25	과세표준 고시업무
	26	지방세 체납관리
	27	지방세 영수증서 원부관리
	28	지방세 가산금 조정
	29	지방세 징수업무의 종합 조정·통제
	30	지방세 결손처분
	31	지방세 체납처분
	32	그 밖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3	공사·용역·구매 계약 체결
	34	물품 총괄관리(정수책정, 취득, 보관, 전환, 처분)
	35	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36	부정당업체 관리
	37	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38	세출예산 집행관리
	3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40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41	유가증권의 수납 보관
	42	급여관리
	43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서 심사
	44	복식회계 기본운영 사무 및 계획 수립
	45	자산관리
	46	통합재무제표 작성 및 자료·검증·수정·보완

	47	세입·세출복식부기회계처리및검증
	48	기초자산,부채실사및기초가액평가
	49	복식부기회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50	청사관리
	51	영조물 손해보험 가입
	52	관용차량관리
	53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등기에 관한 사항
	54	군유재산 총괄 및 관리
	55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및 징수
	56	청사, 관사 및 청내소방시설의 유지관리
	57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청소년과	1	가족복지행정의 종합기획
	2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촉진
	3	여성결혼이민자 관리 및 지원
	4	여성단체육성 및 활성화 대책
	5	여성복지시설의 지도 감독
	6	여성 교육, 지원 및 권익증진
	7	여성회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8	여성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성별영향 분석 평가
	10	여성단체 사업지원 관리
	11	여성 권익증진 사업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외국인 업무)
	13	사회복지기금(여성발전계정) 관리 및 운영
	14	아이돌보미 사업에 관한 사항
	15	성폭력상담소 운영 요보호 여성 보호
	16	결혼소개업소에 관한 사항
	17	공립어린이집 수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8	영육아 보육료 책정 및 보육료 예탁금 관리
	19	유아학비 책정 및 관리
	20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관리에 관한 사항
	21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22	취학전 아동 가정양육수당 책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3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24	다자녀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 학비지원에 관한 사항

	25	저출산 고령화 업무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7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28	보육시설 신고·운영·관리 및 보육료 지원
	29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추진
	30	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 및 관리
	31	아동급식지원사업
	32	아동복지시설의 지도감독
	33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4	요보호아동 보호 관리
	35	요보호여성 선도보호
	36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7	청소년 수련시설 인·허가 및 수련활동 지원
	38	청소년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9	청소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0	드림스타트 서비스 기획 및 계획수립
	41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협력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43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44	드림스타트 수퍼비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5	드림스타트 신규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6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관한 사항
	47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및 입양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48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관한 사항
	49	희망의 연못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0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
	51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사업
	52	사회복지기금(아동계정)관리 및 운영
	53	지역아동센터 및 대철베드로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
	54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에관한사항
	55	향토인재 육성 및 인적자원 관리
	56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7	지역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58	정선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59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0	평생교육도시지정에 관한 사항
	61	기타여성·아동·청소년복지 및 평생학습·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지원 과	1	사회복지시책의 수립 추진
	2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3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
	4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층훈탑 관리 및 현충일 행사
	6	진폐, 생활공감 정책에 관한 사항
	7	읍면 복지회관 운영 관리
	8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9	주민생활서비스 전산망 구축 및 관리
	10	의사상자 관리
	1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12	지방자치단체복지정책평가
	13	강원랜드복지재단 지도 감독
	14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및 관리
	15	사회복지기금 총괄 관리
	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책정
	1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관리
	18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19	북한이탈 주민관리
	20	자활센터 관리
	21	자활근로사업 운영 관리
	22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희망리본사업
	23	자활기금 사업
	24	의료기금 특별회계 운용
	25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26	행려(부랑인) 보호
	27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28	희망복지 지원
	29	바우처 서비스
	30	재가급식지원 사업
	31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32	통합사례 관리 및 콜센터 운영

	3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34	긴급복지지원사업
	35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
	36	자매결연 및 후원사업
	3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38	명절 위문사업
	39	이웃돕기 및 성금모금
	40	전시수용계획수립·추진
	41	노인복지시설 등록 및 지원
	42	노인복지급여 지급 및 관리
	43	재가노인 시설 운영
	44	노인복지 기금운용
	45	노인회 지원 및 관리
	46	노인복지 증진 활성화 사업
	47	노인돌봄 서비스
	48	노인요양시설운영관리
	49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
	50	장사업무 전반
	51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2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53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54	시니어클럽 운영 관리
	55	기타 노인복지 업무 전반
	56	장애인 단체 지원 및 관리
	57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및 관리
	58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59	장애인복지시설등록및지원
	60	기타노인·장애인·사회복지에관한사항
민원봉사과	1	민원실 설치운영 및 민원공무원 복무기강 지휘 감독
	2	민원1회 방문처리 상황의 종합관리
	3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평가 및 시책보완·개선
	4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5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운영 관리
	6	민원행정 전산화 추진(호적 등)
	7	인가·허가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점검지도

	8	민원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
	9	복합 인·허가민원 전반에 대한 안내·상담
	10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11	국민편의 시책개발
	12	각종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13	여권, 주민등록, 인감, 어디서나 민원, G4C 업무
	14	주민등록관리
	15	주민관리 전산업무 추진
	16	외국인·국내거소자·재외국민체류지변경및관리
	17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신규등록, 지적복구)
	18	토지이동에 따른 접수 및 정리
	19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20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21	지적측량 파일제공 및 관리
	22	지적측량 성과 검사
	23	지적확정 및 축적·지면변경에 관한 사항
	24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25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정리
	26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
	27	부동산 관련 특례법 운영·관리
	28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29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30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추진
	31	부동산실거래신고및검인
	32	부동산실거래가위반사항조사
	33	부동산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34	부동산실명법 운영
	35	부동산 과세자료 정보제공
	36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
	37	토지거래 허가관리
	38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
	39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40	토지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관리
	41	외국인토지관리
	42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43	부동산소유권관련국가소송수행
	44	개인별 지적전산자료 제공(조상땅 찾기)
	45	지적공부 열람 및 발급
	46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47	건축물 대장발급
	4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9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운영
	50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구축·관리
	51	공간정보보안관리에관한사항
	52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고도화
	53	상세주소 부여·관리
	54	국가지점번호 설치·관리
	55	국가기초구역 공동활용 체계 구축·관리
	56	국토지리정보 관련 업무
	57	지적전산자료제공·관리
	58	지명관리
환경산림과	1	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추진
	2	수계·권역별 수질관리 전반
	3	맑은 물보전종합대책 수립·추진
	4	환경보전 홍보 및 환경보전행사 추진
	5	토양오염원 관리 및 토양오염 방지대책 수립·추진
	6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안전진단 추진
	7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환특회계)
	8	공해방지
	9	환경신문고 운영
	10	군립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12	동강녹색 모험의 숲 개발사업
	13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휴식지 관리
	14	동강 생태체험 학습지 관리
	15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렵장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8	환경경영시스템
	19	환경프로그램운영(공공기관배출권거래,공공기관온실가스목표관리제)

	20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21	지방의제 21 그린스타트 관리
	22	환경단체 관리
	23	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및구제에관한업무
	24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
	25	수질오염총량제
	26	수질측정망(지점) 관리
	27	생태하천 복원사업
	28	비점 오염원 관리
	29	특정토양관리대상 시설 인허가
	30	유해화학물질 관리
	31	실내공기질 및 라돈관리
	32	전시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3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34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35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6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37	청소행정의 총괄
	38	환경미화원 총괄 및 조정관리
	39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40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시행
	4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2	폐기물관리업무
	43	재활용분리수거및시책추진
	44	음식물 폐기물 처리
	45	국토대청결 운동
	46	영농폐기물 수거관리
	47	석면관리종합정보망 관리
	48	석면 건축물 관리
	49	잔류성 유기오염물 신고 및 관리
	50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51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배출 신고
	52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5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54	생활악취 및 배출시설 관리

	55	조립사업 계획 및 실행
	56	숲 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57	임업분야 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58	산림농업 및 임업후계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9	산림기본 통계조사
	60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
	61	입목벌채허가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62	채종림 관리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63	임도사업, 사방사업
	64	산촌생태마을 조성
	65	산림재해대책, 산림사고 예방
	66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67	임산물 굴·채취 허가
	68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
	69	산림보호 단속
	70	산림병해충 예방·방제에 관한 사항
	71	등산로 조성 ·정비
	72	산불방지대책 수립 ·실행
	73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74	민동산 역사증식
	75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운영
	76	보호수 관리
	77	산림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78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
	79	사방지 지정 및 해제
	80	임업진흥 권역 관리
	81	산림보호구역 관리
	82	공유 임야관리
농업축산과	1	농업·농촌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농정시책개발 및 통합조정
	3	농촌활력증진 및 농업인 복지향상통합 조정
	4	정부양곡 수급관리
	5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관리
	6	관광농원 및 민박시설지원·관리
	7	농촌현장 포럼운영

	8	농업경영컨설팅지원
	9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10	양곡 가공업자 지도관리
	11	향토산업 및 식품전략 육성사업
	12	귀농·귀촌지원 사업
	13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14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관리·운영
	16	농어촌진흥기금관리
	17	밭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18	경지정리사업
	19	한해대책
	20	수리시설 관리
	2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
	22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오지개발, 농로)
	23	농업용 지하수 관리
	24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5	문화마을, 휴양단지 관리
	26	농지전용 허가(협의)
	27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28	농업진흥지역 및 불법농지 관리
	29	개간지 허가
	30	농지정보화
	31	처분농지관리
	32	한계농지 및 영농조건 불리지역 관리
	33	생약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34	농특산물 직거래 등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35	농특산물 상표,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관한 사항
	36	저온저장고시설사업, 농산물집하장의설치및 사후관리
	37	농산물 수출정책에 관한 사항
	38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 및 안정성 조사
	39	농산물가공업체 지원·사후관리 지도
	40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산물계약재배사업의 시행
	41	농업인 정보화교육
	42	농업직접지불제 지원에 관한 사항

	43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4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45	농산물 선별장 지원사업
	46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47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
	48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49	재해피해 농가 농경지 및 시설물 조사·복구
	50	농특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51	친환경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52	친환경농자재지원,친환경농산물직거래
	53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 유통지원(포장재 지원)에 관한 사항
	54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면세유 지원에 관한 사항
	55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약제 지원에 관한 사항
	56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57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관리
	58	소형농기계 지원에 관한 사항
	59	종자업, 비료생산업, 농약판매업에 관한 사항
	60	야생동물 약제지원사업
	61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62	고랭지비교우위대체작목육성사업
	63	전업농 육성, 관리
	64	지역특화 소득원개발사업
	65	특산작물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6	과수, 원예분야 생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7	농산물 가공상품화 사업
	68	식량작물 재배, 생산지원
	69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70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1	축산업 등록에 관한 사항
	72	축산경영 안전 추진
	73	내수면 자원보호 관리
	74	양식장 및 낚시터 허가 관리
	75	토종 그밖의 가축 육성
	76	축산물 유통관리
	77	초지관리에 관한 사항

	78	축산물작업장 지도감독
	79	부정 축산물 단속
	80	친환경 축산 직접 지불제
	81	축산자금 융자 사후관리
	82	가축방역사업
	83	축산시책 및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84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85	축산분뇨 처리사업
	86	학교급식 지원사업
	87	축산재해 안전관리
	88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89	축산물판매업소인허가관리
	90	가축전염병예방및예찰
	91	공수의 위축관리
	92	동물병원·수의 약사 지도 감독
	93	동물약품 판매허가
	94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사항
	95	친환경학교급식
	96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생산자 단체 관리
문화관광과	1	관광개발계획 수립·조정
	2	관광객수용 종합대책 추진
	3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추진
	4	관광이벤트 행사 발굴 육성
	5	철도관광사업
	6	관광지 지정·조정·개발
	7	관광시책 발굴·추진
	8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9	관광안내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관광홍보물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11	여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13	관광업체의 지도 감독
	14	정선5일장 관광상품 운영
	15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16	관광지 이용시설업에 관한 사항

	17	관광개발 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18	관광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관광가이드 운영에 관한 사항
	20	관광통계
	21	백두대간 관광협의체 운영
	22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23	관광이용시설업사업계획승인및등록
	24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시행
	25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사설, 유기기구 및 유기사설업
	26	관광자원 조성 개발
	27	종합캠핑장 조성관리
	28	국·도립공원에 관한 협의
	29	군립공원 지정승인신청 및 군립공원 개발사업
	30	문화예술 행사
	31	문화예술진흥발전계획수립및추진
	32	지역축제 총괄지원
	33	(재)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운영·관리
	34	문화기반시설 확충 운영관리
	35	문화재 및 문화유산관리
	36	문화원 운영관리
	37	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사항
	38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39	문화예술단체 관리
	40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터 운영관리
	41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지도·감독
	42	출판사 및 인쇄사 관리
	43	아리랑전수회관 운영·관리
	44	아리랑 전수육성
	45	민속학교 운영
	46	문화재 조사·지정·보수관리
	47	사적 및 기념물 보수관리
	48	전통사찰 관리
	49	문화사업 육성
	50	컴퓨터 게임장 영업의 관리
	51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

	52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53	관광홍보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4	문화관광 해설사
	55	관광기념품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56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57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 지원
	58	박물관 및 소장 유물관리
	59	향토민속 육성 지원
	60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에 관한 사항
	61	종교단체 관리
	62	문화활동지원사업
	63	문화예술활동 육성 지원
	64	문화이용권 관리 운영
	65	정선아리랑 창작예술 및 문화행사 육성지원
	66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 운영·관리
지역경제과	1	지역경제 동향·분석관리
	2	물가종합대책
	3	공공요금 및 관인요금 관리
	4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5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6	실업대책, 고용촉진훈련사업
	7	취업정보센터 운영
	8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계획 수립·조정
	9	주민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 용가지원
	10	민자유치 사업
	11	폐광지역입주기업대체산업융자금
	12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추진
	13	유통소비 업무에 관한 사항
	14	전통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관련사항
	16	원산지·불법공산품 관리·부정경쟁 방지
	17	정선아리랑 상품권 운영·관리
	18	전통시장 기반시설 및 시설 개·보수
	19	담배 소매인 지정관리
	20	승강기 및 계량기 업무

	21	석공예단지 운영·관리
	22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운영·관리
	23	제조업 및 광업업무에 관한 사항
	24	비축무연탄기금사업에 관한 사항
	25	중소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6	임대공장 관리 및 개·보수
	27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8	광산 인·허가에 관한 사항
	29	광업권 및 탐사권에 관한 사항
	30	광해방지 사업에 관한 사항
	31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32	지적재산 활성화 지원사업
	33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
	34	대부업,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
	35	강원랜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
	36	3.3 기념사업회 업무
	37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38	마을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39	석유판매업 허가 및 관리
	40	가스업체허가및관리
	41	전기 및 전화사업 관리
	42	공산품 품질관리
	43	통신판매업에 관한 사항
	44	지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5	가스시설공업및열관리시설시공업등록관리
	46	상거래질서계도
	47	석탄품질관리
	48	수출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과	1	안전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3	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및일반사항
	4	안전문화운동추진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
	5	안전관련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및 조정
	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7	소방관련 시설 및 의용소방대 지원관리

	8	시설물안전관리지도및재난예방
	9	특정관리대상물 조사 및 관리업무
	10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1	긴급구조·구난 관련기관의 협조 및 지원
	12	재난관련 단체지원·관리
	13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지원 협의
	14	도시가스, 화학물질 등 안전점검에 관한 협의
	15	재해위험지구 조사 및 관리
	16	재해대책본부 운영
	17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
	18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19	재난관리기금 운용
	20	지역재난관리계획 수립
	21	지역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수립
	22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
	23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장·단기 계획 수립
	24	재난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25	재난취약시설의 지도·점검
	26	지해위험지역 조사
	27	재난피해 복구상황관리, 복구사업비 재정 및 결산
	28	재난수습 및 긴급 복구
	2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30	사도설치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31	도로점용 허가
	32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시행
	33	도로굴착 승인 및 심의회 운영
	34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35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36	접도구역 관리
	37	군도, 농어촌도로 과적차량 단속
	38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업무
	39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
	40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
	41	국가 기준점 관리
	42	군도 도로 보수원 관리

	43	위험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표지판, 반사경 설치 등)
	44	도로 설해대책
	45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
	46	철길 건널목 관리
	47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관리
	48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49	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50	마을안길포장사업
	51	도로 유지관리 사업
	52	하천골재 및 육상골재 인·허가
	53	골재 선별 파쇄업 인·허가
	54	지방·준용하천 인·허가 및 관리
	55	공유수면 인·허가 및 관리
	56	하천·소하천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57	하천 공작물 인·허가
	58	양어장 인·허가 관리
	59	하천기본계획 수립
	60	소하천정비 및 중기계획 수립
	61	치수사업 및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62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3	기성제 정비 및 유자관리
	64	하천 댐 관련 사항
	65	하천대상 관리 및 그 밖의 수자원관리상 필요한 사항
	66	하천편입토지보상및폐천부지관리
	67	비 관리청 하천공사
	6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시행
	69	각종 공연·축제행사 재해 대처계획 심의 및 안전점검
	70	재해예방사업
	71	물놀이 관리지역 지정·관리
	7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73	캠핑장 안전관리
	74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75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76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77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
	78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79	수방자재(응급복구장비) 관리
	80	풍수해 보험가입 및 재난지원금 관리
	81	지진대비 업무
	82	재난 예·경보시설 살치운영
	83	재난상황실 운영
	84	지역안전도 진단
	85	우수 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
	86	사전재해영양성 검토 및 운영
	87	급경사지 지정 및 관리
	88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시행
도시건축과	1	군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2	도시 디자인 사업의 종합기획·조정
	3	디자인 정책,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5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6	토지이용규제 KGIS 등재 및 유지관리
	7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입안결정 및 지적고시
	8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9	군계획시설사업 추진 및 관리
	10	도시계획통계,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11	용도지역 지정관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제 운영
	12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13	군계획시설유지관리추진
	14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운영
	15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손실보상
	16	군계획시설의 미불용지 보상
	17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관리
	18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계획수립및시행
	19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계획수립및시행
	20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계획수립및시행
	21	군계획시설소송(구상권청구및손배업무추진
	22	군계획시설민원업무추진
	23	군계획시설개발사업보상 추진

	24	자전거도로 시설 및 관리
	25	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
	26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
	27	옥외광고물관리
	28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9	건축물대장 등록·변경
	30	건축물사용승인, 용도변경허가
	31	공동주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33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운영
	34	건물동원자원 관리
	35	주택융자금 관리
	36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37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관리
	38	주택조합 설립인가
	39	택지조성 사업
	40	개발행위 허가
	41	경관주택 지원사업
	42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승인
	43	주택건설 감리자 지정
	44	불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
	45	건축사, 주택건설, 사업자 관리
	46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47	농촌주택개량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8	농촌빈집 정보센터 운영
	49	재해주택 복구
	50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및 상환
	51	정선군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52	정선군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 운영
	53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 전반
	54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현물)
	55	주거급여, 주택 바우처 업무
	56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57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58	자동차 의무보험·자동차 검사·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징수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등록관련 업무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등록관련 업무
	61	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지도감독
	62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지도감독
	63	택시 미터기 검정 업무
	64	법령위반 자동차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65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 관련 업무
	66	교통질서계도
	67	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
	68	주차장 관련 업무
	69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70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운영
	71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72	궤도사업의 허가(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시설, 유기기구, 유기시설업 제외)
	73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
	74	방치차량 및 무보험 차량 관련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 업무
	75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관리
	76	공영버스 운행 관리
	77	자동차 정비업·폐차업·매매업의 지도·감독
	78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
	79	주차장특별회계
	80	그 밖의 교통운수 행정에 관한 업무
동계올림픽지원단	1	동계올림픽 지원계획 수립·시행
	2	중앙 및 도 단위 올림픽 시책지원
	3	올림픽 관련 자료 기록 관리
	4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행사지원
	5	동계 올림픽 선수 및 관람객 수송대책, 숙박, 안전에 관한 사항
	6	문화·관광·환경 올림픽을 위한 콘텐츠 개발
	7	문화도민 운동
	8	동계올림픽시설 핵심 및 부대 시설사업 지원
	9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추진
	10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 및 접근로 환경정비
	11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대회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2	동계올림픽시설사후활용계획및관리방안

	13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업 관리
	14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관리
	15	정선 친환경 대중 골프장 운영·관리지원
	16	각종 체육대회 유치 참가
	17	체육단체 및 동호회 지도관리
	18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9	체육회 및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지도
	20	국민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21	생활체육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수상 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23	그 밖의 체육진흥 및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별표2]

## 농업기술센터업무분장표(제7조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술지원과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조정
	2	농촌지도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3	농업기술 공보 및 홍보
	4	관용차량·청사·재물 등의 재산관리
	5	농업경영 개선지도
	6	농업정보화 업무
	7	농촌지도자회 육성·지도
	8	오가피가공교육장 및 향토육성산업 시설 관리
	9	4-H 회 육성·지도
	10	농민회 사업 지원 및 관리
	11	생활개선회 육성·지도
	12	강소농 육성 지원
	13	도시농업 육성 및 지도
	14	농업인 전문교육
	15	농촌생활환경 개선
	16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17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도
	18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지도
	19	농업인 실용교육(명칭변경)
	20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지도
	21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2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
	23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4	농업인 대학 운영
	25	귀농·귀촌 교육 및 지도
	26	농업발전 연구포럼 운영
	27	농업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28	농업인 회관 운영·관리
	29	농업인경영상담실, 농업도서실 운영관리
	30	농산물 소득 조사 및 분석
	31	농가경영컨설팅

	32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조사료 생산
	33	농업기계 훈련 및 순회기술교육지원
	34	농업기계 영농지원단 운영
	35	임대 농업기계 유지·관리
	36	농업기계 영농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술연구과	1	정부 및 도 보급종 종자 보급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지도
	3	전작물 기술 지도
	4	농약안전사용 지도
	5	농업기상 재해관리 지도
	6	친환경농업 육성 · 지도
	7	축산기술 연구·지도
	8	특용작물재배 기술 지도
	9	산채류 및 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
	10	과수재배 기술지도
	11	과수연구사업
	12	과수시범포·소과류 시범포 운영
	13	민동산 역사증식 및 보존사업
	14	기후 온난화 대응작목 연구
	15	화훼재배 기술지도
	16	시설원예 기술지도
	17	수출농업 기술지도
	18	양채류재배 기술지도
	19	일반채소재배 기술지도
	20	유용곤충 산업화(추가)
	21	향토음식및식품개발 연구
	22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기술지도
	23	특화작목 품질향상 연구
	24	식량작물 생산기술 연구
	25	원예작물 생산기술 연구
	26	특용작물 재배기술 연구
	27	약용작물 재배기술 연구
	28	토양 및 식물체 분석 처방
	29	지력증진 및 시비개선지도
	30	지역적응 품질 선발 연구

	31	농업인 기술개발사업 추진
	32	농업인 애로기술 지도
	33	지역특화품목 육성
	34	지역농업특성화
	35	신소득작물 개발보급 및 특산품화
	36	유전자원 증식기술 개발
	37	전통발효 기술연구
	38	향토산업 육성
	39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40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41	새기술 실증 시험포 운영
	42	농특산물 가공품 연구 및 상품화 지원
	43	농특산물 저장기술 연구
	44	가공상품 디자인 개발
	45	축산기술 시범사업 및 가축사양관리 지도
	46	친환경미생물 발효축진제조 시설운영
	47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48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49	식품가공실 및 성분분석실 운영
	50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관리
	51	국가 병해충 관리
	52	6차 산업육성 및 지도
	53	유용식물자원의 기능성 연구 및 가공상품화
	54	과학영농체험교육시설운영
	55	지역전략작목산학연 협력사업
	5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

[별표 3]

## 수질환경사업소업무분장표(제11조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수질환경 사 업 소	1	사업소의 예산운영·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 요금 체납관리
	3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관리
	4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운영관리
	5	광역상수도 사업추진
	6	상수원보호구역관리및주민지원사업
	7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
	8	마을상수도 관리
	9	먹는물 수질검사
	10	먹는물 관리업무 전반
	11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2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 운영
	13	지하수 시공업체 관리
	14	지하수 폐공 찾기 및 사후관리
	15	기타 지하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중장기 및 정비기본계획수립 시행
	17	하수관거정비사업
	18	하수도업무추진계획수립 및 시행
	19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0	하수처리시설사업 설계용역 감독
	21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2	하수도 관리유지
	23	마을하수도 관리 및 수질검사
	24	저수조 관리
	25	전용 상수도 인·허가
	26	상수도 위탁 관리 및 경영평가
	27	청사 및 물품관리
	28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29	상하수도(지하수) 사용료 부과(조정)
	30	상수도 위탁 지원 및 관리
	31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32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33	먹는물공동시설관리
	34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35	물의재이용관리업무
	36	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시스템 관리
	37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38	배수설비설치신고에 관한사항
	39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허가에 관한사항
	40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
	41	하수도 통계
	42	수질TMS 유지관리
	35	매립장 운영관리
	37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38	생활쓰레기 소각로 및 폐열 보일러 유지관리
	39	반입 폐기물 부산물 처리
	40	매립장환경오염방지대책
	41	그밖의수질환경사업소소관업무

[별표 4]

## 읍·면업무분장표(제13조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읍·면	1	서무, 인사, 선거, 보안업무, 직원의 소양(교육)과 복지, 문서관리
	2	통계, 공보, 문화, 예술 및 관광, 문화재 보호관리, 체육행사
	3	기획, 심사분석, 시책업무, 법제, 국민운동 지원
	4	여론, 동향, 각종 지시사항
	5	회계, 물품관리, 국채, 기부금품 통제, 선전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국세 위탁징수
	7	군유재산의 관리
	8	사회 및 여성, 청소년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9	매화장에 관한 사항
	10	청소, 환경관리, 자연보호, 수질보전
	11	제적, 가족관계, 주민등록, 주민전산, 체증명, 인감
	12	외국인등록 주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13	범죄자, 파산자의 대장에 관한 사무
	14	농지, 관정 및 수리시설물 관리, 경지정리, 농토배양, 농기계
	15	수도작, 전작, 특작, 원예, 산림, 잠업, 양정
	16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물가안정, 저축증대
	17	소비자보호, 시장관리, 물가조사.조절, 불량.불법공산품 유통단속
	18	노정업무, 기업체관리, 에너지원 판매업체 지도감독, 운수, 교통
	19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20	건축 및 토목공사, 도로(교량) 및 하천관리, 재해대책
	21	광고물관리
	22	도시계획, 공원, 취락시설 관리, 농촌주택 개량, 기타 지역개발사업
	23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시설자연재해의 방재대책
	24	소규모시설물 관리, 농로
	25	그밖의읍·면소관사무중재무,지적,토지,복지,환경,민원,산업,상공,건설 업무에관한사항
	26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등 경보체계의 확립
	27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8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29	기타병무행정에관한사항

2015년도 제12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급수 공사대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8일

#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67호

## 정선군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급수공사대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급수공사대행규칙”을 “정선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을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대행업자"란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다음 각호의”를 “사람은 다음 각 호의”로, “군수”를 “정  
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 자”를 “않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한 자”를 “않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 자”를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만료후”를 “만료 후”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을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으로, “10일전까지”를 “1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에 한하여”를 “사람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정서등 교부)”를 “(지정서 등 발급)”으로 하고, 제7조 중 “의한 지정서를 교부”를 “따른 지정서를 발급”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3,000,000원을”을 “300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거나 군”을 “있거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충당”을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대행업자에게 반환한다”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청”을 “하도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아니하는 이유로서”를 “아니라는 이유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필한 후 수도사용자들에게”를 “마친 후 수도사용자 등에게”로, “관리방법등”을 “관리방법 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필한”을 “마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검사필증을 첨부”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1월이상 6월이하”를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를 “또는 과실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24조 중 “공사시행중”을 “공사시행 중”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 공사에 한하여”를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공사시행중”을 “공사시행 중”으로, “또는 과실로 인하여”를 “또는 과실로”로, “또는 누수등으로”를 “또는 누수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금 이자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지급한 예치 보증금 이자분에 대해서는 제8조제5항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군급수공사대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정선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u>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u>                  ②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u>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u></p> <p>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u>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u></p> <p>1. ~ 3. (생략)</p> <p>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u>                  2. <u>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u></p> <p>제5조(결격사유) 다음 <u>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u></p> <p>1. <u>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2. <u>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p>	<p style="text-align: center;"><u>정선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u></p> <p>제1조(목적) ----- 「<u>정선군 수도급수 조례</u>」 제8조제1항의 <u>급수공사 대행</u>-----                  -----                  -----.</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u>대행업자</u>"란 <u>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u></p> <p>제3조(지정신청) -----                  ----- <u>사람은 다음 각 호의</u> -----                  ----- <u>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정요건) -----                  -----.</p> <p>1. <u>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u>                  2. <u>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람</u></p> <p>제5조(결격사유)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u> -----                  -----.</p> <p>1. ----- <u>않은 사람</u>                  2. -----                  ----- <u>않은 사람</u></p>

3. 지정을 취소 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환) ① (생략)

②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  
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정서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보증금대집행) ①대행업자로 지정받  
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군에 예치하  
여야 한다.

②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  
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  
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3. -----  
----- 않은 사람

제6조(지정기환) ① (현행과 같음)

②----- 만료 후 -----  
-----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  
----- 10일 전  
까지 -----.

③-----  
-----  
----- 사람에 한정하여 -----  
-----  
-----  
-----.

제7조(지정서 등 발급) -----

-----  
----- 다른 지정서를 발급  
-----  
-----  
----- 발급 -----  
-----.

제8조(보증금대집행) ①-----

----- 사람은 -----  
- 날부터 -----  
--- 300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  
권으로 ---.

②-----  
----- 있거나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

-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

<p>③ (생 략)</p> <p>④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 부터 60일이 경과하지 <u>아니하면</u> 반환하 지 아니한다.</p> <p>⑤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u>지 급하지</u> 아니한다.</p> <p>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u>각호에</u>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p> <p>1. 2. (생 략)</p> <p>3. 공사를 제3자에게 <u>하청</u>하지 못한다.</p> <p>4. (생 략)</p> <p>5.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표식을 제기하 <u>여야</u> 한다.</p> <p>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 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u>아니하는 이유로서</u> 그 책임을 면 할 수 없다.</p> <p>제13조(준공검사) ① 삭제</p> <p>②준공검사를 <u>필한</u> 후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과 급수장치 <u>관리방법등</u> 을 주지시켜야 한다.</p> <p>제14조(공사비 및 그 청구) ①제13조의 검 사를 <u>필한</u>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p>	<p><u>하게</u>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않으면</u> ----- -----.</p> <p>⑤----- ----- <u>대행업자에게 반환한다.</u></p> <p>제9조(시공요령) ----- ----- ----- <u>각 호에</u>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하도급</u>----- -----.</p> <p>4. (현행과 같음)</p> <p>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게시하 <u>여야</u> 한다.</p> <p>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 ----- ----- ----- <u>아니라는 이유로</u> ----- -----.</p> <p>제13조(준공검사) ① 삭제</p> <p>②----- <u>마친</u> 후 수도사용 자 등에게 ----- ----- <u>관리방법 등</u>----- -----.</p> <p>제14조(공사비 및 그 청구) ①----- ----- <u>마친</u> -----</p>
--	---

수 없다.

②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1조(신고의무)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제22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②-----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

제19조(자격취소)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신고의무)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0일 이내-----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대행정지)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1. ----- 또는 과실로 -----

2. 제21조에 따른 -----

3. 제20조에 따른 -----

4. -----

---- 그 밖에 -----

<p>제23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 <u>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u>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p> <p>2. 3. (생략)</p> <p>4. 제8조의 보증금을 <u>기한내에</u> 예치하지 아니할 때</p> <p>제24조(계속공사) <u>공사시행중</u>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u>기타</u>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u>당해 공사에 한하여</u>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p> <p>제25조(보수책임) ①대행업자가 <u>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u> 기존의 급수 시설을 <u>파손 또는 누수등으로</u>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u>제8조의 규정에 의한</u>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p> <p>제23조(지정취소)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p> <p>1. <u>제19조에 따라</u> ----- ----- -----</p> <p>2. 3. (현행과 같음)</p> <p>4. ----- <u>기한까지</u> -----</p> <p>제24조(계속공사) <u>공사시행 중</u> ----- ----- <u>그 밖의</u> ----- ----- ----- <u>해당 공사에 한정하여</u> ----- -----.</p> <p>제25조(보수책임) ①----- <u>공사시행 중</u> ----- <u>또는 과실로</u> ----- ----- ----- <u>또는 누수 등으로</u> ----- ----- -----.</p> <p>②----- ----- <u>제8조에 따른</u> ----- -----.</p>
---	---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사항 및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대행업자의 보증금 예치 방법 개정(안 제8조제1항)
  - 보증금 300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군에 예치하도록 함.
-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지급 규정 개정(안 제8조제5항)
  - 이자 발생분을 대행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